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844호
2. 발 의 자 : 이 종 태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5월 27일
5.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II. 제안이유

-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 교원의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구체적인 지원 대책 및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연속성있는 통합교육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조기 발견 및 관리 등을 명시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또한 2025년 2월 28일에 개정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

련된 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교육 시책 추진 시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학생과 장벽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도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아울러, 학부모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특수교육 위한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정책 수립, 통합교육 지원 강화(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의3)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보장하고 연속성있는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실태조사 공개 의무(안 제6조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2항)

IV. 관련법령

1.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4. 6. 4. ~ 6. 8.(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44호로 발의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조기 발견 및 관리 등을 명시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합교육 개정 사항(제21조)을 반영하여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²⁾.

1)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

○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9,703명으로 2019년 대비(92,958명) 16,745명(18%) 증가하였으며,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 등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학교(특수·일반학급)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19~2023년)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9	'20	'21	'22	'23	
특수교육대상자 수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학교 과정별	장애영아	532	439	369	359	407
	유치원	5,989	6,536	7,197	8,248	8,781
	초등학교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중학교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고등학교	21,502	20,655	20,169	19,867	20,725
	전공과	5,382	5,445	5,393	5,311	5,200
특수학교 수	177	182	187	192	194	
특수학급 수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교원 수*	20,773	22,145	23,494	24,962	25,599	

* 국·공·사립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출처: 교육부,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총 30차에 걸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고,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교육부는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 사업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현재까지 총 6차에 걸쳐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특수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습니다.

[표-2] 국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제·개정 경과

개정경과	주요내용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으로 명칭 변경, '07.5.25., 제8483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제11조) 신설 - 통합교육(제21조) 실현 및 순회교육 등(제25조) 실시 근거 마련 -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제27조) 신설 등
제17차 개정 ('19.12.10., 제16746호)	-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규정(제11조)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제13조제3항) 관련 조항 마련 등
제18차 개정 ('20.10.20., 제17494호)	- 순회교육(제25조)에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
제21차 개정 ('21.12.28., 제18637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제15조제1항제11호) -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 하는 학급에 담당교사 배치 등의 조치 마련(제25조제4항 및 제5항) 등
제26차 개정 ('21.12.28., 제18298호)	- 통합학급의 정의 신설(제2조제11호의2) - 교육감의 통합교육 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제21조) -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 원을 제공하는 근거 마련(제28조제9항)
제30차 개정 ('25.2.28., 제20351호)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 록 교육감이 시책을 수립·시행 근거(제21조)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의 예방, 교육 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근거(제28조) 마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연혁, 제·개정 사유)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표-3] 교육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제1~6차)의 주요 내용

구분	비전	주요성과
1차('98~'02)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1세기 복지사회형 장애아교육 모형 정립	- 무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급) 신·증설 등
2차('03~'07)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 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에 포함('05) - 특수학급 1,800개 증설로 특수교육대상 자 통합교육 확대 - 180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 센터 설치 등
3차('08~'12)	장애유형 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 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	- 장애영아 무상교육 전면실시('08~) - 특수학교(급) 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08.5., 시행) -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단계적 확대(’10~’12) 등
4차(’13~’17)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387학급) -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과제 선정·추진 등
5차(’18~’22)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특수교육교원 확충 ※ 특수학교 19교, 특수학급 2,387학급, 교원 5,928명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등
6차(’23~’27)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 ‘2022 개정 특수교육 과정’에 따른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원연수 지원 강화 등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등

*출처: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2022.12.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및 정부부처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교육감이 장애유형·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 제2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무를 안 제3항에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특수교육법」³⁾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3)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특수교육법 제5조),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각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⁴⁾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사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1호⁵⁾에 따라 조직 및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2항과 안 제3항은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적·물적인 지원과 정책실행을 하는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입법목적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5)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2) 실태조사 등(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특수교육법은 교육부장관에게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특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경우 3년마다 실시한 후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도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계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보 공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책의 내실화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6조는 공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3년 주기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바, 정책소통이라는 입법취지와 조사 주체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안 제6조는 정보공개에의 주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통합교육 지원(안 제8조의3)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의3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

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안 제8조의3은 교육감이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특수교육법 제21조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합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특수교육법은 교육감에게 통합교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⁶⁾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에게 통합교육에 대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8조의3은 특수교육법 개정 시행 이전이라 법령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내용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와 같은 지원방안의 수립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이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1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은 센터의 기능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7)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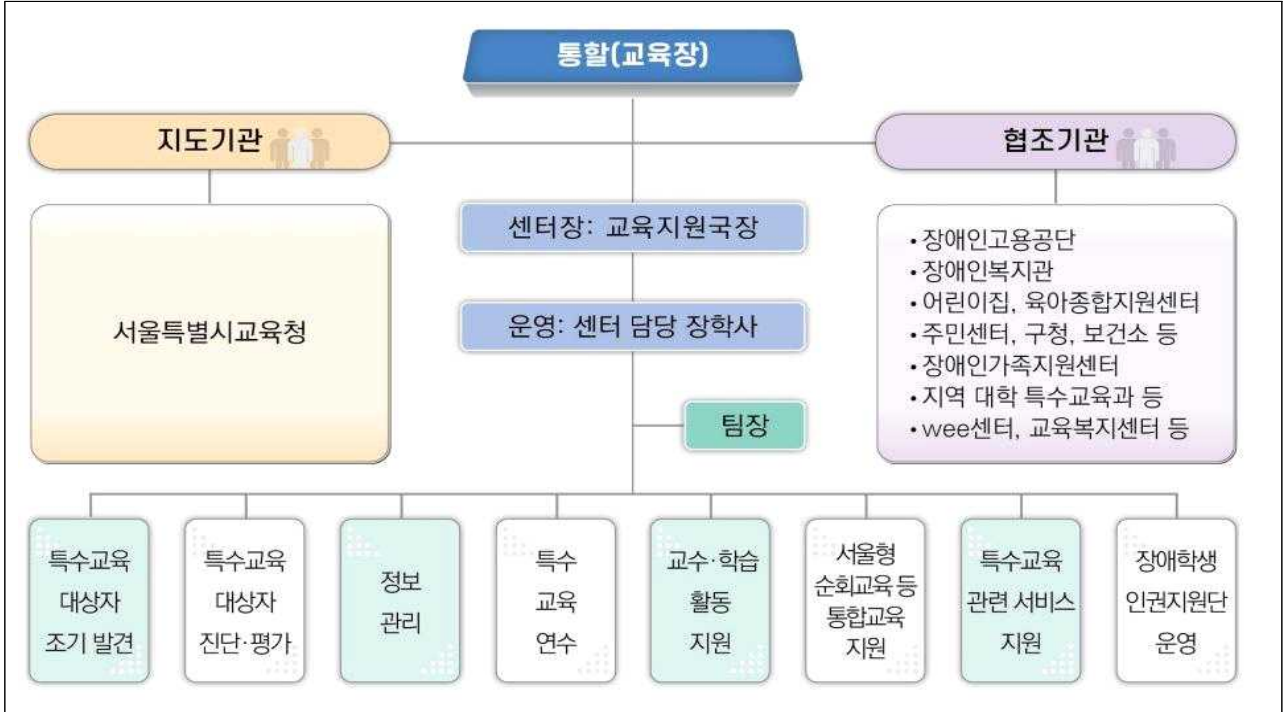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림-1] 서울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 출처: 서울시교육청, 「2024 서울특수교육」 p.23, 2024.2.

[표-4]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

연번	센터명	관할지역	위 치
1	동 부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목동초등학교
2	서 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응암초등학교
3	남 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영일초등학교
4	북 부	노원구, 도봉구	신상중학교
5	중 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청구초등학교
6	강동송파	송파구, 강동구	서울중대초등학교
7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강서양천꿈미래센터
8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서울대청초등학교
9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서울문창초등학교
10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서울행당초등학교
11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송곡중학교

*출처: 서울시교육청, 202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p.5.

5) 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는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부모,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영유아 교육, 통합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미래교육, 진로·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로 특수교육 전문가 자문 협의회를 실시하고, 추진실적 분석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학부모, 교원, 학계, 관련 단체에 순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종합적인 특수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이전 연도의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⁹⁾.
- 따라서 안 제12조는 이러한 특수교육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8)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p.6

9)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주요 기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심사 및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983, 2024. 6. 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현주(2180-8272)